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규정 제358호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확 정 일 : 2026년 08월 12일

시 행 일 : 2026년 08월 12일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제안이유

- 직원별 부가급여 지급기준 일원화 및 문구 명확화

※ 「사규관리규정」 제13조제3항제3호 노사합의에 따른 사규안

2. 주요골자

-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 자녀수당지급 및 지급대상 명확화를 위한
조사 등 수정(제21조제1항)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1조제1항 중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를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는 해외근무직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 자녀 기준은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2026.08.12.>

이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21조(가족수당) ① 주재국에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해외근무직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제21조(가족수당) ① 주재국에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는 해외근무직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 자녀 기준은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직원별 부가 급여 지급기준 일원화 및 문구 명확화

해외근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9.10.01. 규정 제20호
개정 2009.11.30. 규정 제40호
개정 2011.07.28. 규정 제66호
개정 2020.12.09. 규정 제236호
개정 2026.08.12. 규정 제3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외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선발과 복무, 보수 및 복지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근무직원”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해외지사, 해외사업단, 현지법인과 해외사업소(이하 “해외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과 해외부서 개설 전 사전준비 또는 해외부서 폐쇄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지에 주재하는 직원을 말하며, 주재국 정부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기술자문 등의 목적으로 파견한 직원을 포함한다.
2. “해외부서장”이란 해외부서의 장을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란 본사 해외사업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해외부서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3. “현지직원”이란 해외부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을 총칭한다.

제2장 선발기준 및 복무

제3조(선발기준) ① 해외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1. 해외업무추진에 필요한 능력, 태도, 지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 해외부서 부임예정일 현재 3년 이내에 정년이 도달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주재국 공용어를 전공하였거나 소양이 있는 자 또는 영어, 그 밖에 외국어 능력이 있는 자

② 2급 이상 직원과 특수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외근무직원의 선발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현지직원의 임면 및 복무) 현지직원의 임면과 복무, 그 밖에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 교육훈련담당부서장은 해외근무직원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하여 현지 부임 전에 국가관과 사명감을 함양하고, 해외 근무 및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외근무직원의 기본적인 소양교육
2. 어학 및 해당 해외사업 관련사항

3.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제반사항

4. 그 밖의 해외근무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해외근무기간) 해외근무직원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업무협조) 해외부서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할 때 주재국 공관과 긴밀히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해외근무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한민국의 국익 또는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현지국가의 법령, 제도, 문화, 전통과 관행을 위반하여 외교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3. 국가나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4.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현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행위
5. 사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행위
6.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7. 본인이나 그 동반가족 명의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행위
8. 그 밖에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② 해외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의2(업무보고 등) ① 해외근무직원은 월간 업무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해외근무직원이 귀임할 때에는 근무기간 중 수집한 정보를 수록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사직 금지) ① 해외근무직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사직할 수 없다.

② 해외근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현지사직으로 간주한다.

1. 해외근무기간 중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단, 사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2. 해외근무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소환명령에 불응한 경우
4.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당기간 행방을 감춘 경우

③ 해외근무직원이 현지사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권면직
2.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일체 변상
3.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제1항과 제2항은 해외근무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장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소환 등) ① 해외근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외부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목된 경우
4.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5.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국조치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사규에 따른 징계
2. 관련 기관에 대한 여권갱신 및 편의제공 불허 요청

제11조(근무시간 및 휴일) 해외근무직원의 근무시간과 휴일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되 주재국 공관의 예를 따를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해외부서장은 업무상 필요하면 소속직원에게 주재국 내 또는 주재국 외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외부서장이 주재국 외로 출장할 때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장은 「여비규정」을 적용하되, 주재국의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주재국의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체류연장을 위한 비자갱신이 필요하면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재국외 출장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① 해외근무직원이 「취업규칙」에 따른 휴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휴가지는 주재국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주재국 외의 제3국에서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단신부임 해외근무직원이 주재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4개월 마다 1회 5일간(왕복여행일수 및 휴일 포함)의 특별휴가를 본국 또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1회에 14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외근무직원과 그 부양가족의 왕복항공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망
2.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3. 제3항에 따른 특별휴가. 다만,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국가로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본국 왕복항공운임 범위 이내로 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14조(가족동반) ① 해외근무직원은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자녀
3. 부양하고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가족을 동반한 해외근무직원이 해외근무기간의 만료 또는 소환 등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그 동반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동반가족의 계속 체재가 필요하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재국 현지의 생활환경과 교육여건이 열악한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인근국가에 가족을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부임) 해외근무직원이 다른 해외부서로 전보되거나 국내부서로 전보된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인계, 인수나 사전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여권관리) 해외근무직원의 여권은 해외부서장이 일괄 관리한다.

제17조(서약) 해외근무직원은 출국 전에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수

제18조(보수의 구분) ① 해외근무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급여로 한다.

② 제1항의 부가급여는 해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환차손 보전수당, 세액조정수당, 기술수당, 대우수당으로 한다.

제19조(보수의 지급)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은 「직원보수규정」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② 부가급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기술수당과 대우수당은 「직원 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해외근무수당) ① 해외근무수당은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외근무수당에는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 야간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족수당) ① 주재국에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는 해외근무 직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 자녀 기준은 「직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08.12.>

② 배우자와 자녀가 주재국에 도착한 이후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잠시 귀국할 때에 국내 체재기간이 2개월 이하이면 그 월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국내 체재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잠시 귀국하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22조(특수지 근무수당) 근무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근무하는 해외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환차손 보전수당) ① 주재국 화폐에 대한 미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그 국가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무직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사실상 감액된 때에는 감액률을 산정하여 제20조의 해외근무수당에 별표 4의 환차손 보전율을 곱한 금액을 환차손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감액률은 매분기 첫날(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현재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주재국별로 산출하여 해당 분기에 적용한다. 다만, 보수지급일 현재 현지 은행에서 적용한 환율이 정기 환차손보전율 산출 기준일의 환율과 5%이상 차이가 있으면 보수지급일 현재로 감액률을

산출하여 해당 월부터 이를 적용한다.

감액률(%) = (산출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있어서의 주재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미화 “1달러”의 가치 - 감액률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달러”의 가치) / 감액률 산출일 현재 주재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미화 “1달러”의 가치 × 100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환차손 보전율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본사 급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세액조정수당) ① 해외근무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주재국과 국내에 납부하는 세액(근로소득세액 등 제세를 포함한다)이 국내에서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을 초과하여 보수가 감소되면 그 감소액에 상당하는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조정수당은 주재국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 이내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조정수당 지급액 중 국내법에 따른 외국 납부 세액공제(이월 공제액을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그 공제액은 다음 연도 5월말까지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수당을 지급, 정산한 부서는 정산내역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본사 급여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급여) ① 해외근무직원이 해외근무 중 또는 귀국 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원보수규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외근무로 인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직급과 같은 직급, 같은 호봉, 같은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국내 근무직원의 보수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6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해외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근무자가 해외근무의 명을 받고 해외근무지에 도착하기 전의 기간과 해외근무자가 국내근무의 명을 받고 해외근무지를 떠난 이후의 기간은 국내근무직원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 가족수당의 지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1. 가족수당은 가족이 주재국에 도착한 달, 그 밖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해외근무직원의 퇴직, 본국으로의 전근이나 자녀의 연령 초과(매년 12월 31일 기준), 그 밖의 사유로 지급요건이 상실되면 그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제27조(보수의 선급) 해외로 전근 명령을 받은 국내직원이 해외근무지에 도착한 때에는 3개월분 내에서 해외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복지

제28조(사회보장보험가입 등) ① 공사는 해외근무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1. 해외근무직원과 동반가족(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의료보험(주재국에서 치료불가시 인근 국가로의 전지 치료를 위한 교통비 및 의료비 등 포함 조건)

2. 현지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제 보험

3. 그 밖의 현지사정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 보험회사의 생명, 신체상 상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

② 제1항제3호의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되며, 당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29조(요양비 지급) 해외근무직원과 그 동반가족이 현지에서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면 별표 5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개정 2020.12.09.>
2. 부상 또는 질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체상의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로서 국내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경우
3. 질병예방을 위한 개인적인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
4.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제30조(전지 및 귀국치료) ① 해외근무직원과 그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수술 또는 치료가 곤란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전지 또는 귀국치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지(轉地) 또는 귀국치료를 권고하는 현지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15일 이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여건상 의사소견서
첨부가 어려울 경우 해외부서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전지 또는 귀국치료에 필요한 항공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학자금 보조) 공사는 해외근무직원의 자녀(제14조제3항에 따라
인근국가에 주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지급대상 : 현지국가의 법령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 과정의 정규
교육기관에 취학중인 해외근무직원의 자녀 <개정 2020.12.09.>

2. 지원범위 :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항목
<개정 2020.12.09.>

3.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의 재외
공무원 대상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범위 내. 다만, 월평균 학비가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유치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09.>

제32조(주거지원) ① 공사는 해외근무직원과 그 동반가족(제14조제3항에
따라 인근국가에 주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거를 지원하기 전까지는 「여비규정」의 해외여비 정액표
상 숙박비를 지급하고 실비정산 하여야 한다.

③ 주거규모와 지원 금액은 현지사정 및 시세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정착지원금 및 차량 지원 등) 공사는 해외근무직원의 주재국 조기 정착과 해외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금 또는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규모 등은 주재국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현지직원의 보수 등) 현지직원의 보수·복지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현지국가의 법령, 관례 및 실정을 감안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직원 보수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0.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전 현재 종전 한국토지공사의 「국외근무직원복무규정」 및 「국외현지직원의임용과복무에관한예규」, 대한주택공사의 「국외근무직원복무관리규정」에 따라 국외근무직원(또는 현지직원)으로 선발(고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선발(고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1.30.>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8.>

이 규정은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09.>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08.12.>

이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근무수당표 (제20조제1항 관련)

해외근무수당표 (제20조제1항 관련)

(월지급액, 단위 : 미달러)

직급	적용기준	지역구분
1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11 (재외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재외공무원 3급”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 별표 3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되, 북한지 역은 가지역으로 구분한다.
2급	같은 규정 별표 11의 “재외공무원 4급”	
3급	같은 규정 별표 11의 “재외공무원 5급”	
4급 이하	같은 규정 별표 11의 “재외공무원 6급”	
상위직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급직급과의 차액의 1/2을 추가로 지급한다.		

[별표 2] 가족수당표 (제20조제1항 관련)

가족수당표 (제21조제1항 관련)

(월지급액, 단위 : 미달러)

배우자	자녀
해외근무수당의 1/4	1인당 60

[별표 3] 특수지근무수당표 (제22조 관련)

특수지근무수당표 (제22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미달러)

직급	적용기준	지역구분
1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구분표)의 “재외공무원 2·3급”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 칙」 별표2에 따라 지역 구 분
2급	같은 규정 별표의 “재외공무원 4급”	
3급	같은 규정 별표의 “재외공무원 5급”	
4급 이하	같은 규정 별표의 “재외공무원 6·7급”	
1. 북한지역은 나지역으로 한다.		
2. 주재국 근무지가 각 국의 수도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여건이 극히 열악한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의 2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범위는 환경조건 등을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3. 전쟁 또는 내전 등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가지역 지급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국가 및 기간은 외교통상부의 관련조치를 감안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4. 상위직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급직급과의 차액의 1/2을 추가로 지급한다.		

[별표 4] 환차손보전율표 (제23조제1항 관련)

환차손보전율표 (제23조제1항 관련)

감액률	환차손보전율
2%이상 ~ 4%미만	2%
4%이상 ~ 6%미만	4%
6%이상 ~ 8%미만	6%
8%이상 ~ 10%미만	8%
10%이상 ~ 12%미만	10%
12%이상 ~ 14%미만	12%
14%이상 ~ 16%미만	14%
16%이상 ~ 18%미만	16%
18%이상 ~ 20%미만	18%
20%이상	20%

[별표 5] 요양비지급한도 (제29조 관련)

요양비지급한도 (제29조 관련)

구분	직원	가족
입원치료	실비의 90%	실비의 80%
그 밖의 치료	실비의 80%	실비의 70%

서 약 서

본인은 해외근무직원으로서 근무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외근무직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해외근무기간 중 본국 정부와 공사의 지시에 따르고 국가 또는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국가와 공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현지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과 사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귀책사유로 조기 귀국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가 관련 규정에 의한 징계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 하